



##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수탁자배상책임보험 도입 필요성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김동겸 선임연구원

### 요약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여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 동 제도 도입 시 투자운용을 전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하는 수탁자의 권한은 증대되어 엄격한 수탁자책임이 요구됨. 미·일 보험회사들은 수탁자책임 강화에 따른 수탁자책임 위반 소송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수탁자책임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수탁자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국내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상품경쟁력 제고차원에서 기금형 제도 도입과 연계된 수탁자배상책임보험 상품 개발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이 신탁법상 신탁의 형태로 별도의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기금형 제도가 도입됨.

● 현재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실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 개정안에서는 노·사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운용방향 등을 결정하며, 자산운용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러한 기금형 제도가 도입될 경우 투자운용을 전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하는 수탁자(기금운용위원회 등)의 권한이 증대됨에 따라 엄격한 수탁자책임(Fiduciary Liability)이 요구될 것임.

● 이에 수탁자책임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지대한 손해를 주었을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수탁자배상책임보험(Fiduciary Liability Insurance)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일찍이 기금형 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에리사(ERISA)법에서는 신중한 관리자 원칙(Prudent Man Rule)에 기초하여 수탁자<sup>1)</sup>에게 엄격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수탁자책임에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배상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수탁자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함.
  - 이와 더불어 신중한 관리자 원칙(주의의무)을 위반한 수탁자를 보호하거나 책임을 경감하는 수탁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모두 무효로 하는 것으로 규정함.
- 특히, 수탁자가 수탁자책임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부장관, 연금급부보증공사 등 정책당국뿐 아니라 근로자나 수급권을 가진 퇴직자 등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동 규정은 개인의 경우 수탁자책임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수탁자 행위에 대해 많은 정보가 있는 정부로 하여금 연금수급자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함임.

■ 이러한 수탁자책임 강화 등으로 수탁자책임 위반 소송사례<sup>2)</sup>가 빈발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수탁자책임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수탁자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제공함.

-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AIG, Chubb, Hanover 등이, 일본에서는 손보재팬(Sompo Japan) 등이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여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위험을 인수하고 있음.
  - 수탁자배상책임보험 약관은 손해보험의 통일된 표준약관보다는 Hanover 등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하는 주요 손해보험회사가 자사의 약관을 개발·사용하는 형태임.

〈표 1〉 미·일의 수탁자배상책임보험 내용 비교

| 구분          | 미국                                     | 일본                                  |
|-------------|----------------------------------------|-------------------------------------|
| 피보험자 범위     | · ERISA법상에서 규정된 수탁자                    | · 사용자, 기금관리기관 등 수탁자                 |
| 담보손해 (불법행위) | · ERISA법상의 수탁자책임, 제도관리상의 과실, 부적절한 공시 등 | · 수탁자의무 위반, 경영상 오류, 태만, 사무착오 및 누락 등 |
| 보상범위        | · 손해배상금, 소송비용을 보상한도로 보상                | ·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손해방지비용 등             |
| 보상한도액       | · 보험계약금액                               | · 1사고 당 3억 엔, 1억 엔, 5천만 엔 중 택일      |

자료: Hanover 및 손보재팬(2015).

■ 따라서 국내 보험회사는 미·일 등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상품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금형 제도와 연계된 수탁자배상책임보험 상품개발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kiri](#)

1) 미국 등은 수탁자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지명 및 신탁수탁자, 펀드매니저 등)는 모두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음.  
 2) 일본의 수탁자책임 위반 소송사례로는 일본 방직업 후생연금기금 소송, 동정실업 후생연금기금 소송 등을 들 수 있음.